

부산지방법원 2021. 9. 30 선고 2020가단350573 판결 [점유회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주연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

변 론 종 결 2021. 9. 9.

판 결 선 고 2021. 9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점유하고 있었는데, 피고들이 2020. 4. 초순경 위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들은,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, 피고들에게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점유회수의 청구에 있어서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살피면 되는바(대법원 2021. 2. 4. 선고 2019다202795, 202801 판결 등 참조),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,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재덕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[1종 건물의 표시]

경남 함안군 [도로명주소] 경남 함안군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5층 다세대주택

1층 계단실 17.68㎡

2층 다세대 주택 164.93㎡

3층 다세대 주택 159.47㎡

4층 다세대 주택 159.47㎡

5층 다세대 주택 157.37㎡

[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]

1.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.38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2.296

2. 2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74.07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5.831

3.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.38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2.296

4. 3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8.75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1.821

5. 4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9.38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2.296

6. 4층 호 월근권크리프구조 68.75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1.821

7. 5층 호 월근권크리프구조 67.42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0.818

8. 5층 호 월근권크리프구조 68.75㎡

대지권의 비율 419분의 51.821. 끝.

